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3.1조 일반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 그 이용 및 개발 촉진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다.

제13.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들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다른 장들이 우선한다.

제13.3조 관세¹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미부과 관행²을 유지할 것이다.³

제13.4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어떠한 당사국도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법규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용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국내 법규를 유지한다.

가. 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적절한 전자서명과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⁴⁵, 그리고

¹ 이 장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양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² 현재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 빨리 각료회의 결정(WT/MIN(13)/32-WT/L/907)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제5항과 합치되게 유지될 것이다.

³ 양 당사국은 이 사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의 어떠한 변경과도 합치되게, 관행을 조정할 권리(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인증의 방법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한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전자거래에 대한 자신의 전자 인증이 전자 인증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자 인증 기관이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 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인증서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13.5조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제13.6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13.7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법과 규정, 규칙 및 기준, 그리고 우수 관행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훈련 활동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의 교류, 협력 활동 그리고 전자상거래 공동사업을 장려한다.
4. 양 당사국은 협조적인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제13.8조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국의 경우, 전자거래의 전자서명이 제3당사자에 의하여 증명되기 위하여, 인증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인증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공급자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다.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전자 거래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서명에 관여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신빙성과 신뢰성 검증을 제공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적, 광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발생,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13.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